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결 과

1991. 12. 26

가. 제출자 : 충청북도 교육감

문교사회위원회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2월 16일

○ 회부일자 : 1991년 12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 74회 정기회

○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 (1991. 12. 26)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가. 제 안 사 유

지금까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있어 응시 수수료를 2,000원으로하여 왔으나, 그 수수료만으로는 동시험 시행경비를 확보할 수 없어 해마다 소요예산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 및 해당경비 확보 측면에서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나. 주 요 골 자

1인당 시험 응시수수료 2,000원을 20,000원으로 변경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1991.10. 8 교육부령) 제21조
에 의해 응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되어 있는바, 1987년 8월 7일 제정되고
1991년 3월 25일 개정된 교육자치법에 따른 1인당 2,000원의 응시 수수료는
동 시험시행 예산에 따른 비용과의 커다란 차이가 있어 해당 경비확보 측면
에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물론 10배인 20,000원으로 대폭 인상한 점에 다소 문제가 따르겠으나, 수익
자부담 원칙과 타 시,도의 개정 예에 형평을 유지하는 등 인상이 불가피하
다고 보며, 또한 1991.11.1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121호로 입법 예고하고
1991.12.12 교육위원회에서 의결 절차상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타 시,도
의 인상폭을 참고하시어 긍정적으로 의결하여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역행되며 한꺼번에 10배를 인상
하는 것은 지나치며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함.

8.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별첨 조례안